명지대학교 학칙

(최종개정일 2024. 1. 1.)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명지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적) 우리 대학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올바른 활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통하여 인류사회 평화와 발전에 기여 봉사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 제 제 1 절 교육조직

- 제3조(교육조직) ①우리 대학교는 인문캠퍼스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미래융합대학을 두고 자연캠퍼스에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건축대학, 국제학부를 두며, 양 캠퍼스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융합대학과 방목기초교육대학을 둔다. 방목기초교육대학은 교양교육, 교직과정, 전공자유선택과정(전공자유학부) 및 융합전공학부(인문)을 담당한다. (변경 2004.3.1., 2004.3.2., 2005.8.1., 2008.7.1., 2010.3.1., 2012.7.1., 2015.12.1., 2016. 7.1., 2017.5.1., 2017.7.1., 2017.9.1)
 - ②우리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 1.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변경 2005.8.1)
 - 2.전문대학원 :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신설 2006.11.29)
 - 3.특수대학원 : 통합치료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경영대학원(변경 2003.3.1, 2003.3.1, 2004.3.2, 2005.3.2, 2005.8.1, 2005.10.1, 2006.11.29, 2009.10.1, 2011.10.1, 2019.7.1.)
- 제4조(과정) ①대학에 학사과정을 두고,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공개과정을 둘 수 있으며,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직학과에 교직과정을 두고, 이외에 별도로 학군무관후보 생과정을 둔다.(변경 2008.7.1, 2008.12.1)
 - ②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

- 정"이라 한다)을 둔다.(변경 2005.3.1, 2005.8.1)
- ③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둔다.(신설 2006.11.29)
- ④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 ⑤각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변경 2005.8.1)
- ⑥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변 경 2005.8.1.)
- ⑦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명칭, 수여학위명은 별표9에 제시된 대로 하며, 학생정원 및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 변경 2017.3.1.)

제5조(입학정원) ①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 ②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변경 2005.3.1, 2005.8.1, 2005.10.1)
- ③전문대학원 석 · 박사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06.11.29)
- ④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4와 같다.

제 2 절 부속기관·부설교육기관·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기구 (절 명칭 변경 2004.3.2)

- **제6조(부속기관 등)** ①우리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 연구기구를 둔다.(변경 2004.3.2, 2004.5.1, 2008.3.1)
 - 1.부속기관: 도서관, 전산정보원, 대학교육혁신원, 박물관, 명지미디어센터, 보건의 료센터, 생활관, 체육부, 직장예비군연대(변경 2005.2.1, 2005.8.1, 2006.1.5, 2007.7.1., 2008.3.1., 2010.3.1., 2010.10.1., 2013.10.1., 2015.3.1., 2016.6.1., 2016.12.1., 2021.4.22., 2022. 3.1.)
 - 2.부설교육기관 : 인문캠퍼스 미래교육원,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 교육원, 명지기독학술원(변경 2006.1.5, 2008.3.1., 2010.3.1., 2019.10.1., 2020.3.1.)
 - 3.부설연구기구 : 교책중점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일반연구소(변경 2006.1.5, 2007. 7.1, 2008.3.1., 2008.7.1)
 - ②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발전계획, 사서의 배치기준 및 교육, 자료 및 시설기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1.)
- **제6조의 2(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신설 2004.3.2) ①우리 대학교에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에 의한다.(변

제 3 절 직 제

제7조(직제) 우리 대학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제 3 장 학사운영 제 1 절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8조(학년도 · 학기) ①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 ②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되, 각 학기는 학사력으로 정한다. 다만, 유연학기를 허가받은 전공·학년·학위과정은 세 학기 이상으로 학기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변경 2021.1.1.)
 - ③제2항 이외에 하계와 동계 계절수업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업일수는 각 4주 이 내로 한다.(변경 2004.4.1., 2004.7.1., 2021.1.1., 2022.3.1.)
- 제8조의 2(학기개시일 · 입학일)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은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다만, 유연학기를 허가받은 전공·학년·학위과정은 학기 개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4.1.)
- 제9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변경 2009.3.1.)
 - ③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별 또는 과목별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3.1.)
- 제9조의 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및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 ②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본조 신설 2023.12.1.)
- 제10조(휴업일) ①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국정 공휴일
 - 2.일요일

3.개교기념일 : 9월 7일

4.하계 및 동계방학

②임시 공휴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11조(수업연한) ①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대학 건축학부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변경 2009.3.1)
 - ②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통합과정은 4 년으로 한다.(변경 2004.4.1, 2005.3.1, 2006.9.1., 2009.10.1., 2022.3.1.)
 - ③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2년6개월로 한다. 다만, 외국인 대상 특정학과 또는 전공의 경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신설 2022.3.1.)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변경 2023.5.1.)
 - 1.학사과정 : 1년
 - 2.각 대학원 석사과정 : 6개월(변경 2005.8.1., 2022.3.1.)
 - 3.각 대학원 박사과정 : 6개월(변경 2005.5.1, 2022.3.1.)
 - 4.대학원 통합과정 : 1년(신설 2005.3.1., 2005.8.1.)
 - 5.각 대학원 외국인 대상 특정학과 또는 전공 : 1년(신설 2022.3.1.)
 - ⑤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9.1.)
- 제12조(재학연한) ①학사과정은 재학연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②대학원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변 경 2005.3.1, 2005.8.1)
 - ③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9)
 - ④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년, 계절수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04.4.1, 2006.9.1)
 - ⑤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 하지 아니한 다.(변경 2005.3.1, 2005.8.1., 2006.11.29., 2014.3.1)

제 3 절 입 학

제13조(입학시기) ①학사과정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은 외국인 학생의 신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변경 2004.4.1., 2017.4.1)

- ②각 대학원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변경 2004.4.1., 2005.8.1)
- 제14조(입학자격) ①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 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각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이 학사과정과 동일하거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관련 학부(과)·전공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변경 2005.8.1)
 - ③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변경 2006.11.29) ④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4조 제2항과 같다.(신설 2005.3.1)
 - ⑤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다.(변경 2005.3.1., 2005.8.1., 2015.7.1.)
- 제14조의2(입학허가 및 취소) (신설 2012.10.1., 조명 변경 2016.9.1.)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2016.9.1.)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9.1.)
 -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 2.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변경 2019.4.1.)
 -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제15조(정원외 입학) 특례입학(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및 특수교육대상자·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 학생·특성화고졸 재직자의 입학은 성적을 확인하여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학생 및 특성화고졸 재직자는 학사과정에 한한다.(변경 2005.10.1, 2009.7.1, 2010.6.1., 2012.1.1)
- 제1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제16조의 2(입학사정관) 다양하고 공정한 입학정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을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사정관운영규정'에 의한다.(신설 2009.7.1.)
- 제17조(편입학) ①학사과정과 각 대학원과정의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05.8.1)
 - ②학사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2,3년제 대학 졸업 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③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과정 제3학년에 학사편입학 할 수 있다.
 - ④외국인 학생의 경우 2학년, 3학년, 4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3.01.)
 - ⑤ 징계 제적 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⑥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 8.1., 2006.11.29)
- 제18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재입학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②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 8.1, 2006.11.29)

제 4 절 휴학·복학·제적·자퇴 및 전과(부)

- 제19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의무군복무, 모성보호, 창업(학부생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휴학은 예외로 한다.(변경 2020.7.1)
 - ③휴학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군복무, 모성보호, 창업(학부생에 한함)휴학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변경 2014.3.1)
 - ④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⑤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으

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7.1.)

- 제20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5.8.1., 2006.11.29)
- 제21조(제접·자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 1.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2.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국내 다른 대학(교)에 이중 입학한 자
 - 4.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사과정에 한함)
 - 5.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석·박사과정에 한함)
 - 6.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7.품행이 불량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8.(삭제 2020.7.1.)
 - ②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외국인학생의 제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7.1.)
- **제22조(전과 (부))** ①학사과정의 전과(부)는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계열별 구분 없이 실시한다.(변경 2005.4.1)
 - ②대학원의 전과는 1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전입계열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변경 2004.7.1, 2005.8.1)
 - ③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전과는 동일 대학원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전과(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제 5 절 등록 및 수강신청

- 제23조(등록) ①입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재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24조(등록금 징수방법) ①등록금은 학기별로 징수한다.
 - ②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③등록금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분납할 수 있다.
- ④등록금 징수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 4.1, 2005.8.1., 2006.11.29)
- 제25조(등록금의 반환) ①과오로 납입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한다.
 - ②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제26조(수강신청) ①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②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 8.1, 2006.11.29)

제 4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 제27조(교육과정) 학사과정 및 각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제27조의2(인증프로그램의 설치·운영) ①학부(과)에서는 외부공인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7.11.1) ②인증프로그램의 편성·운영 및 이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7조의3(전공자유선택과정 설치 · 운영)** (조 신설 2010.3.1) ①학사과정에 전공자유

선택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학부는 캠퍼스별로 전공자유학부를 둔다.(변경 2012.7.1)

②전공자유선택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방목기초교육대학 소속으로 하며, 2개학기 이수 후 학부(과)를 선택하여 진급한다.

제27조의4(융합전공학부 [인문] 설치 · 운영)

- ①학사과정으로 인문캠퍼스에 융합전공학부(인문)을 둔다.
- ②융합전공학부(인문)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방목기초교육대학 소속으로 하며, 2개학기 이수 후 학과를 선택하여 진급하되. 대학에서 개설하는 미래산업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과 선택 및 연계전공 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7.1.]

제27조의5(융합공학부 설치 · 운영) ①학사과정으로 공과대학에 융합공학부를 둔다.

②융합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학생들은 2개 학기 이수 후 학과를 선택하여 진급 하되, 대학에서 개설하는 미래산업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과 선택 및 연계전공 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7.1.]

제27조의6(평생교육시설 운영) (조번호 변경 2017.7.1.) ①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 출석 또는 원격기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수 있다.

②인문캠퍼스 미래교육원 및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에 원격평생교육 과정을 둘수 있다. (신설 2014.9.1., 변경 2020.3.1.)

제27조의7(본조 신설 2018.6.1., 삭제 2019.3.1.)

제28조(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신설 2007.11.1.)

제29조(학점) ①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연습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예체능계열 전공실기과목의 학점 당 강의시간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2019.1.1.)

②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진행시간 25분 이상, 총 학습시간 50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9.1.1., 변경 2021.6.1.)

- **제30조(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변경 2020.3.1., 2021.6.1.)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 체할 수 있다.(신설 2021.6.1.)
 - ③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학문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공동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변경 2005.8.1., 2006.11.29., 항번호변경 2021.6.1.)

- ④교내·외 대학원간의 학문적 교류를 위하여 협동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21.6.1.)
- ⑤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항번호변경 2021.6.1.)
- ⑥원격수업은 개설후 폐강된 교과목 학점수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 학기별 각전공(학과) 및 교양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2019.1.1., 2020.3.1., 2021.6.1. 항번호변경 2021.6.1.)
- ⑦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 명지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규정 및 미래융합대학 학사처리(학사과정)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변경 신설 2019.1.1., 변경 2019.4.1., 2021.6.1.)
- 제31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학사과정 학생의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수업, 채플, 봉사학점, 교양실습학점, 교육봉사학점, 군사학 학점은 이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변경 2006.3.1, 2009.3.1., 2011.3.1., 2016.12.1)
 - 1.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미래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국제학부: 17학점 (변경 2017.1.1., 2021.6.1.)
 - 2.공과대학, 건축대학, ICT융합대학 : 18학점 (변경 2016.3.1., 2018.3.1., 2021.6.1.) 다만, 외부지원사업 등을 통한 특수 프로그램 운영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의한다.(단서신설 2012.3.1)
 - ②계절수업 취득학점은 7학점 이내로 한다. (변경 2016.12.1.)
 - ③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의한다.(변경 2012.2.1)
 - ④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 제32조(각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대학원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초과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5.8.1., 2022.4.1.)
 - ②전문대학원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12학점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8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 기준학점에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변경 2014.3.1)
 - ③특수대학원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학기당 취득학점 초과이수에 관하여는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 (변경 2017.3.1.)

제33조(학점의 인정) ①(삭제 2006.3.1)

②학부과정의 현장실습수업, 창업준비활동・창업활동 및 진로탐색활동 과목은 강

- 의를 수강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변경2014.3.1., 2018.7.1., 2019.9.1., 20 20.7.1., 2020.9.1.)
- ③미래융합대학 입학생이 입학 전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0.7.1.)
- ④국내·외 다른 대학(원), 부속·부설교육기관과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20.7.1.)
- ⑤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항번호 변경 2020.7.1.)
- 제34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학점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 대학교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제35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제적이전 취득학점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 제36조(전과 [부] 생의 학점인정) 전입이전 취득학점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 제37조(학위과정의 연계) ①학사과정 학생이 각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의 이수학점에 6학점까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해당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변경 2005.8.1, 2009.12.1)
 - ②석사과정 학생이 대학과 각 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 사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 정할 수 있다.(변경 2005.8.1)
 - ③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둔다.(신설 2017.9.1.)
 - ④학위과정의 연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

원), 학치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 4.1, 2005.8.1., 2006.11.29., 2017.9.1)

제 2 절 부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 제38조(부전공) ①학사과정의 타 학부(과) 교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 공을 인정한다.(변경 2009.3.1)
 - ②대학원의 부전공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이상으로 한다. (변경 2005.8.1)
 - ③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 ④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에 의하다.(변경 2004.4.1., 2005.8.1)
- 제39조(학사과정의 복수전공) ①소속 학부(과) 전공교과과정에 따라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타 학부(과)의 전공교육과정에 따라 최소 36학점 이상(다만, 경영대학, ICT융합대학, 공과대학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별표1-1의 기준을 적용함)을 이수한 자에게 복수전공을 인정한다. 다만, 학문기초교양과목 가운데 복수전공학부(과)가 지정한 과목도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13.12.1., 2015.3.1., 2017.7.1)
 - ②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증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
 - ③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 제40조의1(학사과정의 연계전공) ①소속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및 2개 이상의 학부 (과)등이 연계하는 교과목을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별표 1-2와 같이 이수한 자에게는 연계전공(복수전공)을 인정한다. 다만,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이 소속 학부(과)의 최소전공졸업이수학점수 이상이 되도록 이수하여야 한다. (변경 2013.12.1., 2017.7.1)
 - ②연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증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
 - ③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 제40조의2(대학원과정의 융합전공)(조 신설 2020.7.1.) ①소속 학과(부)의 전공교과목 및 2개 이상의 학과(부) 등이 융합하여 개설한 교과목을 학칙시행규칙(대학원) 별 표1과 같이 이수한 자에게는 융합전공을 인정한다.
 - ②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증서에 융합전공을 표시한다.
 - ③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대학원)에 의한다.

제 3 절 교직과정

- 제41조(교직과목 개설) 학사과정의 교직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으로 하되,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2조(교직과정 이수)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따른다.(변경 2013.8.1.)
- 제43조(교육실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우리 대학교가 지정한 학교에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2학점)을 받아야 하고,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2학점)을 하여야 한다.(변경 2013.8.1.)
- 제44조(교직과정 운영)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 및 교원양성위원회규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8. 3.1)

제 4 절 시험과 성적

- 제45조(시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 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일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46조(성적)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결상황, 학습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은 "P"(합격), "N"(불합격)으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변경 2005.5.1, 2009.11.1)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4.5	A0	4.0
B+	3.5	В0	3.0
C+	2.5	C0	2.0
D+	1.5	D0	1.0
F	0.0		

②(삭제 2009.11.1)

- ③성적은 수업일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의무군복무, 모성보호, 창업 휴학, 교육실습은 예외로 한다.(변경 2014.3.1)
- ④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⑤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7조(학사과정의 학사경고) ①당해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1.50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변경 2017.1.1.) ②재학생 중 수강신청을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에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다만, 현장실습, 교환학생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졸업유예자는 예외로 한다.(변경 2011.5.1., 2019.9.1.)

제 5 절 학군무관후보생과정

- 제47조의2(설치)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군의 간부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내에 학군무 관후보생과정을 둔다.
- **제47조의3(교과목 이수)** 학군무관후보생과정 학생은 매학기 개설되는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47조의4(예비역 교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학군 무관후보생을 지도할 예비역 교관을 임용할 수 있으며, 예비역 교관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7조의5(준용)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을 준용한다.

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 1 절 수 료

- **제48조(수료학점)** ①학사과정의 수료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에 의한다.(변경 2005.3.4, 2006.4.17, 2009.3.1, 2009.7.1)
 - ②각 대학원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 36학점이상, 박사과정 48학점이상으로 한다.(단서삭제 2004.3.2, 변경 2005.3.1, 2005. 8.1, 2006.11.29)
 - ③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사 및 석사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 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제49조(과정수료) ①수업연한동안 등록을 필하고, 학사과정 또는 각 대학원과정의 교육 과정 이수구분별 소요학점을 충족하여 제48조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수료 를 인정한다.(변경 2005.8.1)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과정은 취득성적이 따로 정한 기준에 달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05.8.1)
 - ③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일로 한다.(변경 2004.4.1)
 - ④과정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제 2 절 졸 업

-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 ①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28학점(공과대학, ICT융합대학은 134학점, 건축대학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전통건축전공은 170학점, 건축대학 공간디자인전공은 164학점, 계약학과는 12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변경 2005.3.4, 2006.4.17, 2009.3.1, 2011.5.1, 2012.3.1., 2016.3.1., 2018.7.1., 2019.1.1) ②(삭제 2009.3.1)
 - ③전체 성적이 평균평점 4.0 이상(학석사 연계과정인 자는 평균평점 3.5이상)이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한 학기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변경 2009.3.1., 2019.9.1.)
 - ④학사과정의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 제51조(각 대학원과정의 졸업) ①각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 석사학위의 경우 학과가 선택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정한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신할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은 소정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변경 2004.3.2., 2005.8.1., 2017.11.1., 2023.3.1)
 - ②각 대학원과정의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 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제52조(학위수여) ①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 1.학사과정 : 학사학위
 - 2.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변경 2005.8.1)
 - 3.전문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신설 2006.11.29., 변경 2013.4.1.)
 - 4.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 ②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140학점 이상인 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인의학위 전공과 다른 전공을 우리 대학교에서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전공학점으로 48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우리 대학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은행제의 경우 우리 대학교에 해당 전공분야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수해야 할 전공학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단서신설 2002.7.8, 변경 2005.8.2, 2009.9.1, 2011.3.1)

- ③학위는 학년도 말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긴 때에는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 ④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치 않 다고 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⑤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⑥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⑦제2항에 따라 수여하는 학위 종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7.1.)
- 제53조(학위의 종류) 우리 대학교가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5와 같다.
 - 2.대학원 석·박사학위의 종류는 별표6과 같다.(변경 2005.8.1)
 - 3.전문대학원 석·박사학위의 종류는 별표7과 같다.(신설 2006.11.29)
 - 4.특수대학원 석사학위의 종류는 별표8과 같다.
- 제54조(학위수여의 취소) 석사, 박사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 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 진 경우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변경 2014.10.1.)

제 6 장 학생활동

제55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 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제56조(학생회 등) 학생은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단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단체등 록과 운영에 관한규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 **제57조(학생활동지도)** ①학사과정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담임 교수를 둔다.
 - ②각 대학원과정 학생의 학사 및 연구와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변경 2005.8.1.)
- 제58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규정(학사과정) 및 장학규정(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 제59조(포상·징계) ①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현저하게 타의 모범이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 ②학생이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③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④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규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제 7 장 공개강좌

- 제60조(공개강좌) ①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③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및 공개강좌운영에 관한내 규에 의한다.(변경 2004.4.1)

제 8 장 특수학생 교육 등

- 제61조(특별수강생) 우리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원)간 교류 등을 통하여 각 학위과 정에 특별수강생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2조(위탁생) 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감

독청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6.11.29)

- 제63조(시간제등록생)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변경 2014.9.1.)
 - ①시간제등록생의 선발 인원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신 설 2014.9.1)
 - ②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1항에 따른다. (신설 2014.9.1)
 - ③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9.1)
 - ④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일반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반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4.9.1)
 - ⑤수업방법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9.1)
 - ⑥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4.9.1)
 - ⑦시간제등록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규칙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4.9.1.)
- 제64조(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4.1, 2005.8.1, 2006.11.29)

제 9 장 위원회 등

- 제64조의2(대학평의원회) (조 신설 2007.11.1)①우리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하다.
 -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규정에 의한다.
- 제65조(교무위원회) ①우리 대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실·처장, 국제교류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사회봉사단장, 도서관장, 전산정보원장 및 대외협력·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변경 2005.8.1, 2006.11.29, 2008.3.1, 2010.3.1., 2012.3.1., 2021.4.22.)
 -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학칙 및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변경 2012.7.1)
 - 2.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3.입학, 졸업,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5.교직원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 6.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교무위원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규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 **제66조(대학원위원회)** ①대학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과대학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장, 대학원 교학처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변경 2004.3.2, 2005.1.11, 2005.8.1, 2006.1.6, 2006.11.29, 2007.6.1, 2007.7.1)
 -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변경 2007.6.1.)
 - 1.입학, 수료, 학위수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변경 2015.7.1.)
 - 2.학과(부)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6.(삭제 2007.6.1)
 - 7.(삭제 2007.6.1)
 - ④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규정에 의한다.(변경 2004.4.1.)
- 제66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조 신설 2010.12.21)①우리 대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책정 시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다.

- 제67조(각 대학원운영위원회) 각 대학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변경 2004. 4.1, 2005.8.1., 2006.11.29)
- 제67조의2(규정심의위원회) (조신설 2012.7.1) 우리 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의 심의를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7조의3(교과과정심의위원회) (조신설 2018.3.1.)①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과과정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 ②교과과정위원회는 단과대학 및 본부 교과과정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의한다. 단, 교양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③교과과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 2.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3.교과과정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4.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교과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본부교과과정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2019.5.1.)
 - 2.당연직 위원은 각 대학 학장, 교육지원처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 부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및 약간 명의 교원으로 한다.(변경 2019.5.1.)
 - 3. 위원장의 유고 시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단과대학교과과정심의위원회: 단과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단과대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결과를 본부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방목기초교육대학은 교양교육위원회로 대신한다.
 -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교과과정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따로 정한다.
- 제67조의4(국제화정책위원회)(신설 2019.11.1.) 우리 대학교 국제화 정책 수립, 국제화 관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기타 국제화분야의 주요 내용 심의를 위하여 국제화정책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8조(교수회)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 대학별 교수회, 계열·학부장 및 학과주임교수회를 둘 수 있다.(변경 2004.4.1.)
- 제69조(교수활동) 우리 대학교 전임교수가 정계나 정당에 소속되어 대학 교수의 직분 (교수, 연구, 학생지도)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70조(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①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교육과 연관된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 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희롱)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 ②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변경 2004.4.1.)
- **제70조의 2(자체평가)** (조신설 2009.3.1) ①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에관한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0조의 3(대학 발전계획 환류체계 운영) 우리 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발전계획의 추진, 성과평가 및 개선조치 등 대학 발전계획 환류체계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2017.10.1.)]

제 10 장 보칙

- 제71조(학칙 변경)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창이 공포한다.(변경 2020.7.1.)
- 제72조(제 규정 제정 및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제73조(시행규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4조(준용) 이 학칙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 준한다.

본 학칙 실시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197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7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2조를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9782호(1980.2.23) 부칙 제2항 및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1292호(1983.12.30)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도호국단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급 제대장과 부서장은 본 학칙 제 39조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 등 임원으로 본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학원 사태와 관련되어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2조, 제15조 및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①본 개정 학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 1.본 학칙 시행 당시 인문대학 국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인문대학 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2.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 학칙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4조, 제48조, 제49조, 제57조, 제5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개정 학칙은 199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당시 학과소속 변경에 의하여 이과대학 체육학과 재학생 (휴학생을 포함한다)은 예체능대학 재학생으로 보고 인문사회대학 중어중문학과, 도 서관학과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은 인문대학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9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개정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당시 인문대학 도서관학과, 공과대학 응용전자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명칭 변경에 의하여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고, 예체능대학 문예창작학과의 한국문예전공, 영미문예전공, 일본문예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개편에 의하여 한국문예전공은 문예창작학과에, 영미문예전공은 영미문예학과에, 일본문예전공은 일본문예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경상대학 정보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명칭 변경에 의하여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5조, 제30조의2,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 1.1994학년도 이전 아랍어과에 입학한 자는 학과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아랍어과 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본 학칙 시행 당시 이과대학 생물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 명칭 변경에 의하여 이과대학 생명과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와 예술 체육대학 영미문예학과, 일본문예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공과대학 토목환경공 학과와 예체능대학 영어과, 일본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③(교양필수과목 및 졸업학점 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교양필수 과목 및 졸업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건축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 명 칭변경에 의하여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4월 9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7년 12월 9일)

②(등록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는 제55조의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하며 다만, 1997학년도 제2학기 이후의 등록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최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예체능대학 문예창작학과·영어과·일본어과 재적생은 소속 변경에 의하여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영어과·일본어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예체능대학 체육학부 바둑지도학전공 재적생은 학과명칭 변경에 의하여 예체능대학 바둑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이 학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 1.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대학 일본어과, 영어과, 공과대학 전기제어계측공학부, 예체 능대학 산업디자인학부(만화창작전공) 재적생은 학부(과) 명칭 변경에 의하여 각각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공과대학 전기정보제어공학부,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부(영상애니메이션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1998년이전 인문대학 아랍어아랍문학과로 입학한 자는 2002년 8월까지는 종전의학과명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아랍지역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3.1998년이전 경상대학 경영무역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2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부 명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경상계열(경영, 무역)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4.1998년이전 이과대학 생활과학·식품영양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2년 8월까지는 종 전의 학부명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생활과학부 또는 생활과학·식품영양학부(식품영양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5.1997년이전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1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부명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전기정보제어공학부 또는 전자정보통신공학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6.1998년이전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2년 8월까지는 종전의학과명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화학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는 세라믹화학공학부에,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는 SOC공학부에,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부에, 산업공학과는 산업시스템공학부에,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7.1998년이전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음악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2년 8월까지 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산업디자인학과는 산업디자인학 부에, 음악학과는 음악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9조 내지 제81조는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교양과목 및 졸업학점 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의 교양(공통교양, 계열교양)과목 및 졸업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예체능대학 졸업학점)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구 교과과정에 따라 130학점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상교육원 폐지는 2001년 12월 17일자로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현재 정보통신경영대학원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특수대학원학칙에 따른다.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학칙의 폐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칙 및 특수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다만, 학칙 통합으로 이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제 규정 정비 시까

지 종전의 명지대학교학칙,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③(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학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에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재적하고 있는 자는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③(교통관광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교통관광대학원에 입학하여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④(지방자치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자치대학원을 사회복지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지방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새로운 학칙을 적용한다.
- ⑤(기록과학대학원 폐지 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기록과학대학원 박물관학과와 문화 재보존관리학과를 통합하여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로 변경한다. 다만, 기록과학 대학원 큐레이터학과로 입학하여 2002학년도 전기에 졸업하는 재적생은 기록과학대학원 박물관학과로 졸업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특수대학원 입학정원은 2003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 1.2003년 이전 법정대학 법정계열(행정학과·법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의 계열(학과명)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 가운데 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를 선택한자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에 제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법학과를 선택한 자는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2003년 이전 법정대학 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3.2003년 이전 법정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은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적하고 있는자로 본다.
- 4.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상계열(경영학과·무역학과·경제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의 계열(학과명)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 가운

데 무역학과 또는 경제학과를 선택한 자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무역학과·경제학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경영학과를 선택한 자는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학전공)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재적하고 있는 자로본다.

- 5.2003년 이전 경상대학 무역학과·경제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 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은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경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6.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은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7.2003년 이전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부(지식경영전공·정보경제전공)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은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정보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8.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상계열<야간>(경영학과·무역학과·경제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의 계열(학과명)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 가운데 무역학과<야간>와 경제학과<야간>를 선택한 자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 계열<야간>(무역학과·경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경상대학 경영학과 <야간>를 선택한 자는 경상대학 경영학과
- 9.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영학과<야간>에 입학한 자는 경상대학 경영학과<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 1.2004년 이전 일반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6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6년 9월 이후 재적생은 통신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2004년 이전 일반대학원 정보제어공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6년 8월까지는 종전의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6년 9월 이후 재적생은 정보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3.2004년 이전 일반대학원 건축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6년 8월까지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6년 9월 이후 재적생은 건축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③(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 1.이 학칙 시행당시 이과대학 및 예체능대학 재적생은 단과대학 명칭 변경에 의하여 자연과학대학 및 예술체육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2003년 이전 법정대학 법정계열에 입학한 자는 학과선택 시점부터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 또는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법정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3.2003년 이전 법정대학 법정계열<야>에 입학한 자는 학과선택 시점부터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야>정치외교학과<야>북한학과<야> 또는 법과대학 법학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법정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4.2003년 이전 법정대학 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4학 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법정대학으로 졸업할 수있다.
- 5.2003년 이전 법정대학 행정학과〈야〉정치외교학과〈야〉북한학과〈야〉에 입학한 자는 2004학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야〉정치외교학과〈야〉북한학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법정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6.2003년 이전 법정대학 법학과·법학과(야)에 입학한 자는 2004학년도부터 법과대학 법학과·법학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법정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7.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상계열에 입학한 자는 학과선택 시점부터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경제학과 또는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경상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8.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상계열<야〉에 입학한 자는 학과선택 시점부터 사회과학 대학 무역학과<야〉·경제학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무역학과<야〉·경제학 과<야〉를 선택한 자는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경상 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으며, 경영학과<야〉를 선택한 자는 2007년 8월까지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의 재적생은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학전 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9.2003년 이전 경상대학 무역학과·경제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4학년도부터 사회과 학대학 무역학과·경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경상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10.2003년 이전 경상대학 무역학과<야〉·경제학과<야〉에 입학한 자는 2004학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야〉·경제학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경상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11.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4학년도부터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경상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12.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영학과<야>에 입학한 자는 2004학년도부터 경영대학 경영학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그 외의 재적생은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3.2003년 이전 경상대학 경영정보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4학년도부터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정보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7년 8월 이전 졸업자 중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경상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③(특수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1.이 학칙 시행 당시 사회교육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언어치료전공재적생은 학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언어치료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문화재보존관리전공 재적생은 학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문화재보존관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이 학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①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내지 제22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다.
- ②(경과조치)
- 1.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2.2004년 이전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7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7년 9월 이후 재적생은 건축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3.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 무기재료공학과 재적생은 학부(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4.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 의상·아동학부 의상학 전공, 아동학 전공 재적생은 각각 일반대학원 자연과학계열 의상학과, 인문사회계열 아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5.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및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정보전공) 재 적생은 학부(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각각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및 경영대학 경 영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6.2004년 이전 인문대학 어문계열에 입학한 자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중어중문학과·일어일문학과 또는 영어영문학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7.2004년 이전 인문대학 인문계열에 입학한 자는 사학과·문헌정보학과·아랍지역 학과·아동학과·미술사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 는 자로 본다.
- 8.2004년 이전 인문대학 인문계열(야)로 입학한 자는 영어영문학과(야)·청소년지도 학과(야)·철학과(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2008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부(과)로 졸업하고, 그 외의 재적생은 각각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청소년지도학과·철학과 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9.2004년 이전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한 자는 행정학과·무역학과·경 제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0.2004년 이전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5년 2월까지는 경영학부(경영학전공)·경영정보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그 외의 재적생은 경영계열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1.2004년 이전 법과대학 법학계열(야)에 입학한 자는 2008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로 졸업하고, 그 외의 재적생은 법과대학 법학계열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2.2004년 이전 공과대학 화공/세라믹/환경생물공학계열(화학공학과·세라믹공학과·환경생물공학과)에 입학한 자는 공과대학 화공신소재공학계열(화학공학과·신소재공학과) 및 환경생명공학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3.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세라믹공학과 재적생은 학부(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4.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환경생물공학과 재적생은 학부(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공과대학 환경생명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투자정보대학원, 유통대학원 및 정보통신경영대학원을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으로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 1.이 학칙 시행당시 투자정보대학원 부동산학과 및 유통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이 학칙 시행당시 투자정보대학원 금융학과, 국제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투 자정보대학원으로 졸업할 수 있다.
- 3.이 학칙 시행당시 정보통신경영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의 정보통신경영대학원으로 졸업할 수 있다.

- ③(사회교육대학원 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 육대학원 기공과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명칭 변경에 의하여 사회교육대학 원 우슈기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④(산업대학원 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1.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건축개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명칭 변경에 의하여 산업대학원 도시건축개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정보기술학과, 교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는 200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2004학년도 이전 학사과정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구교과과정에 따라 140학점(건축대학 건축학과는 175학점)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부동산유통 경영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라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③(산업대학원 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관광학과, 한국전통음식문화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④(산업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산업시스 템경영학과 산업공학전공, 관광학과 관광경영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 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사과정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입학정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1.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경영대학 경영

학부(경영학전공), 예술체육대학 산업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공업디자인·영상디자인전공), 예술체육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학부(과)·전공 명칭변경에 의하여 각각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산업디자인·영상디자인전공), 예술체육대학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2005년 이전 인문대학 어문계열에 입학한 자는 국어국문학과·중어중문학과·일 어일문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3.2005년 이전 인문대학 인문계열에 입학한 자는 사학과·문헌정보학과·아랍지역 학과·아동학과·미술사학과·철학과·청소년지도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 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4.2005년 이전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에 입학한 자는 행정학과·경제학과·정 치외교학과·북한학과·디지털미디어학과 및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를 자율적으 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5.2005년 이전 경영대학 경영계열에 입학한 자는 경영대학 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 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6.2005년 이전 자연과학대학 이학계열에 입학한 자는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식품영양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7.2005년 이전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계열에 입학한 자는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전 자공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8.2005년 이전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계열에 입학한 자는 공과대학 정보공학과·통 신공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9.2005년 이전 공과대학 화공신소재공학계열에 입학한 자는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0.2005년 이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계열에 입학한 자는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1.2005년 이전 공과대학 건설교통공학계열에 입학한 자는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 교통공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2.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야) 재적생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9년 8월까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야)로 졸업하고, 그 외의 재적생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3.2005년 이전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야)에 입학한 자는 행정학과(야)·경제학과(야)·정치외교학과(야)·북한학과(야) 및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2009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로 졸업하고, 그 외의 재적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 및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14.2005년 이전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야)·경제학과(야)·정치외교학과(야)·북한학과(야)에 입학한 자는 2009년 8월까지 종전의 학과로 졸업하고, 그 외의 재적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북한학과에 재적하고있는 자로 본다.
- ③(특수대학원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1.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대학원 사회체육학과(무용요법전공) 및 우슈기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2.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도시건축개발학과(도시건축개발전공), 산업시스템경 영학과(제조물책임〈PL〉전공) 및 문화재학과(건축고고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3.이 학칙 시행당시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학원 환경생명계열 신설에 따른 사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대학원 자연과학계열 생명과학과와 공학계열 환경생명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8년 9월 이후 재적생은 환경생명계열 환경생명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기록과학대학원 여가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대학원 및 학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사회교육대학원 여가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사회교육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학과 명칭변경에 의하여 무용예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인정학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9년 2월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특수대학원 입학정원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재적생 중 예술체육대학 의상디자인학 과에 입학한 자는 2009년 8월까지 예술체육대학 의상디자인학과로 졸업하고, 2009년 9월 이후 재적생은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대학원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대학원 무역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국제통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④(사회교육대학원 학과(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평생교육행정전공, 영재교육전공)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환경생명공학부(환경생명공학전공), 예술체육대학 문화예술학부(공연예술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재적생은 학부(과)·전공 명칭변경에 의하여 각각 공과대학 환경생명공학과, 예술체육대학 문화예술학부(뮤지컬공연전공, 영화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 시스템공학전공) 학부명칭 변경,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 통합 및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6년 이전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 시스템공학전공)에 입학한 자는 2010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부명으로 졸업하고, 2010년 9월 이후 재적생은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대학원 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학과통합에 의하여 2007년 2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7년 3월 이후 재적생은 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2007.3.1)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록과학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기록과학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정보공학전공) 재적생은 2011년 8월까지 종전의 학부명으로 졸업하고, 2011년 9월 이후 재적생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대학원 무도건강산업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무도 건강산업학과 재적생은 무도산업학과 및 스포츠예술산업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법과대학 법학계열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법과대학 법학과에, 예술체육대학 문화예술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예술체육대학 영화·뮤지컬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철학과 석사과정 및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신설과 산업경영공학과의 학과명칭 변경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 중 석사과정은 2009 년 8월, 박사과정은 2010년 8월, 석·박사통합과정은 2011년 8월까지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그 이후의 재적생은 산업경영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에서 건축대학 공간디자인학과로, 건축대학 건축학과에서 건축학부(건축학전 공, 전통건축전공)로의 소속 및 명칭변경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사과정 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8년 이전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에 입학한 자는 2009년 3월부터는 건축대학 공간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2008년 이전 건축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한 자는 2009년 3월부터는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산업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목회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이 학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영화· 뮤지컬학과로 학과명칭 변경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대학원 문화예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09년 2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09년 3월 이후 재적생은 영화·뮤지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학원 아동학과 석·박사학위 과정 아동학전공 폐지 및 유아교육·보육전공과 아동가족심리치료전공 신설, 경영학과 박사과정 부동산학전공 신설, 건축학과 석·박사 및 통합과정 건축역사및이론전공과 도시및단지설계전공 신설, 영화·뮤지컬학과 석사과정 영화·뮤지컬 전공 폐지 및 영화전공과 뮤지컬공연전공 신설,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전자계산교육전공을 컴퓨터 교육전공으로 명칭변경,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 변경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경생명계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환경생명계열 환경생명정 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공학계열 환경생명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학군무관후보생과정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학생무관후보생과 정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재적생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라 교육받은 자로 간주한다.

부 최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국제대학원 엔지니어링경영및 설계학과 폐과와 문화교류선교학과에서 경배와찬양학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부전공신설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제대학원 학과폐과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국제대학원 엔지니어링경영및설계학과와 문화교류선교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사과정 교과과정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단과대학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인문대학 청소년지 도학과, 아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인문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회교육대학원 학과통합으로 인한 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단과대학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대학 청소년지도학과, 아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사회과학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사회교육대학원 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대학원 무용예술학과 및 사회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과 정의 입학정원 변경, 중어중문학과 및 바둑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국제대학원 경배와찬양학과를 사회교육대학원으로 소속변경,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전공 신설, 도자기기술학과 차문화전공 신설, 무도산업학과 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 문화예술대학원 피아노페다고지학과 신설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산업대학원 무도산업학과 학과 및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무도산업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12년 2월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고, 2012년 3월 이후 재적생은 체육무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국제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국제대학원 경배와찬양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11년 2월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고, 2011년 3월 이후 재적생은 사회교육대학원 경배와찬양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환경생명정보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의 에너지공학전공 신설, 사회교육대학원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전공 폐지와 기업교육전공 신설,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범죄예방지도전공 폐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사회교육대학원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전공 및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범죄 예방지도전공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대학원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전공 및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범죄예방지도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소속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 중 공학교육인증 심화 프로그램에 이수중인 자는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①이 학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4의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신경언어프로그래밍전공 폐지, 산업대학원 전통공예학과 폐지, 문화재학과 보수·설계전공 명칭변경 및 고고학전공 신설,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조달학과, 디지털경영학과 폐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신경언어프로그래밍전공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신경언어프로그래밍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산업대학원 전통공예학과 폐지와 문화재학과 보수전공, 실측및설계전공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전통공예학과와 문화재학과 보수 전공과 실측및설계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④(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조달학과, 디지털경영학과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조달학과, 디지털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소속 정보 공학과, 통신공학과 재적생은 2010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10년 9월 이후 재적생은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컴퓨터소프 트웨어학과 재적생은 2010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10년 9월 이후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재적생은 학과통합에 의하여 2013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13년 9월 이후 재적생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대학원 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대학원 통신공학과, 정보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3의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문화자원기록전공 신설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의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 위과정 신설, 디지털미디어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지방행정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신설, 별표4의 사회교육대학원 심상치료학과 폐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다.

②(사회교육대학원 심상치료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 대학원 심상치료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이 학칙은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4의 사회교육대학원 예술 치료학과 무용·동작치료전공, 철학상담치료학과, 실용음악학과 신설과 가정의례학과, 여가경영학과, 경배와찬양학과 폐지,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의 재무컨설팅학과 신설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사과정 연계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사회교육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대학원 가정의례학과, 여가경영학과, 경배와찬양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학사과정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환경생명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12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12년 9월 이후 재적생은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명칭변경 및 경영대학원 신설, 별표3의 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정원, 별표4의 사회교육대학원 실용음악학과를 문화예술대학원으로 소속변경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특수대학원 학과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교육대학원의 과학교육전공과 가정교육전공,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의 유통학과, 물류학과, 재무 컨설팅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4의 사회교육대학원과 문화예술대학원의 학과(전공) 신설, 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사회교육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

교육대학원 예술치료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④(문화예술대학원 문화기획학과, 사진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문화예술대학원 문화기획학과, 사진학과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정원, 별표4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별표6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 위명, 별표8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수여학위명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입학정원의 환경생명정보학과 폐지 및 생명과학정보학과 신설, 환경에너지공학과신설, 에너지융합공학과 신설, 별표6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경생명정보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대학원 공학계열 환경생명정보학과 생명과학 전공, 환경생명공학 전공, 에너지공학 전공 재적생은 2013년 2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13년 3월 이후 재적생은 각각 자연과학계열 생명과학정보학과, 공학계열 환경에너지공학과, 공학계열 에너지융합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동학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대학 아시아언어학부 아랍지역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17년 2월까지는 종전의 학과명으로 졸업하고, 2017년 3월 이후 재적생은 중동학부 아랍지역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공간디자인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건축대학 공간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신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사회교육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4월 1일자 부칙에도 불구하고 예술치료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13년 8월 1일부터 예술심리치료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9조, 제40조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연계전공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학사과 정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대학원 지적GIS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지적GIS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3학년도 입학한 재적생은 법과대학 글로벌법무금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법과대학 법무정책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전공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학칙 시행 당시 스포츠기록분석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에니어그램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학칙 시행 당시 에니어그램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전공명칭 변경에 의하여 에니어그램상담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부동산투자경영전공 및 부동산개발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산업대학원 체육무도학과, 스포츠예술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체육무도학과, 스포츠예술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교육대학원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대학원 생활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학칙 시행당시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자연과학대학 생명 과학정보학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법과대학 법무정책 학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17년 3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과학대학 사회 복지학과〈야간〉, 경영대학 부동산학과〈야간〉, 법과대학 법무정책학과〈야간〉의 재적생 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교육대학원 전공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교육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평생교육학과, 상담심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별표3·별표4·별표 6·별표8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산업대학원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 도자기 기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 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미래융합대학 법무정책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적용하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9의 계약학과 명칭 및 수여학위명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적용하고,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1의 학사과정 입학정원・별표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정원・별표6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학사과정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음악학부, 영화・뮤지컬학부, 체육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단과대학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전기전자정보통 신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18년 2월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고, 2018년 3월 이후 재적생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와 ICT융합대학 정보 통신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다.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 공, 역사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9의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에 대한 개정 내용은 개정일인 2018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스포츠학부 스포츠산업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스포츠학부로 입학하 자는 변경된 학칙을 적용하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4와 별표8의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별표3), (별표4) 및 (별표8)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컴퓨터공학과 최소 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제5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컴퓨터공학과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9)의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 터 적용하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별표6)의 경우에는 2019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회교육대학원 명칭 변경은 2020학년 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사회교육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사회교육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8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정원, 별표4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별표6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 별표8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수여학위명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영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스포 츠경영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산업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 문화재학과 보수·설계전공, 고고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④(산업대학원 학과명칭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 융합보안학과 및 건강과학산업학과 자연치유산업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2월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고, 2020년 3월 이후 재적생은 산업대학원 융합보안안보학과 및 건강과학산업학과 건강과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과목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 공통교양 기독교 영역의 교과목 명칭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기독교 영역의 교과목 구성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영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서비 스경영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합과정 입학 정원과 (별표6)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과 신설 및 전공 명칭 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예술학부 작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중동학부 아랍지역학과 및 국제학부 공상관리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정원과 (별표6)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3), (별표4), (별표7), (별표8)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9)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을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사과정 입학정원 개정내용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학사과정 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사회과학대학, 자연캠퍼스 전공자유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정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4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입학정원과 별표8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수여학위명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통합치료대학원 생활체육교육학과요가치유전공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9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 학위명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1조 제1항 단서는 이 학칙 시행일(2023.3.1.) 이전에 대학원과정을 수료한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학과 신설)대학원 학과 신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산업대학원 학과명칭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 세라믹아트공학과(소지,유약,차문화)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고, 2023년 9월 입학생부터 변경된 학과 및 전공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정원,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개정 내용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데이터기록전공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데이터기록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③(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금융전공,국토공간정보전공, 도시재생전공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금융전공, 국토공간 정보전공 및 도시재생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이 학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입학정원, 별표 6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 별표 9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9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 학위명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학사과정 입학정원 (변경 2010.6.1, 2011.6.1, 2012.4.1., 2012.7.1., 2013.2.1., 2013.4.1., 2 013.12.1., 2014.6.1., 2015.1.1., 2015.5.1., 2015.12.1., 2016.3.1., 2016.6.1., 2016.7.1., 2017.4.1., 2017.5.1., 2017.7.1., 2017.9.1., 2018.4.1., 2019.1.1., 2019.5.1., 2020.7.1., 2021.3.1., 2021.4.1., 2022.5.1., 2022.8.1., 2022.9.1., 2023.5.1.)

캠퍼	대	.alea es 12/21\ _1 →			입 힉	· 정 원		
스	학	대학, 학부(과), 전공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어문학부	213	213	213	180	180	180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아랍지역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인	중동학부						
	문	아랍지역학과	-	-	-	33	33	33
	ᆫ	인문학부	110	110	110	110	110	110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글로벌아시아문화학과						
인		문예창작학과	37	37	37	37	37	37
문		소계 (2개 학부, 12개 학과)	360	360	360	360	360	360
캠		사회과학대학	_	_	294	294	294	294
		미래사회인재학부	191	191				
퍼		행정학과						
스	사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회	청소년지도・아동학부	63	63				
	과	청소년지도학과						
	학	아동학과						
	·	디지털미디어학과	40	40				
		사회복지학과	-	-	-	-	-	-
		*사회복지학과	-	-	-		-	-
		소계 (2개 학부, 6개 학과)	294	294	294	294	294	294
		경영대학	250	250	250	250	250	250
		경영학과						
	경	국제통상학과						
	영	경영정보학과						
	0	부동산학과	_	-	-	_	_	_
		*부동산학과	-	-	-	-	-	-
		소계 (3개 학과)	250	250	250	250	250	250
	n)	법학과	70	70	70	70	70	70
	법	법무정책학과	_	_	_	_	-	_
	과	*법무정책학과	-	-	-	-	-	-
		소계 (1개 학과)	70	70	70	70	70	70
		전공자유학부(인문) (1개 학부)	95	95	95	95	95	97
		융합전공학부(인문) (1개 학부)	50	50	50	50	50	50
	ICT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40	40	40	40	40	40
		융합소프트웨어학부		0.0		2.2	0.0	0.0
	융합	2 -1 -1 2 -1 -1 -1	60	60	60	60	60	60
	대학	데이터테크놀로지 전공)	100	100	100	100	100	100
		소계 (1개 학부, 1개 학과, 2개 전공)	100	100	100	100	100	100

캠퍼	대	네취 취임(네) 기고			입호	학 정 원		
스	학	대학, 학부(과), 전공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창의융합인재학부	7	7	7	7	7	8
		사회복지학과	10	10	10	10	10	8
		부동산학과	10	10	10	10	10	8
	**	법무행정학과	6	6	6	6	6	6
인	미래	심리치료학과	6	6	6	6	6	6
문 캠	융합	미래융합경영학과	1	3	3	3	3	6
퍼	대학	회계세무학과	2					
스		법무정책학과	-	-	-	-	-	-
		멀티디자인학과	2	2	2	2	2	
		소계 (1개 학부, 7개 학과)	44	44	44	44	44	42
		인문캠퍼스 계 (8개 학부, 30개 학과, 2개 전공)	1,263	1,263	1,263	1,263	1,263	1,263

- ※ * 는 야간강좌 개설 학부(과)임
- ※ ** 는 교육부에서 주관한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평생학습자 를 위한 단과대학임
- ※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아시아문화학과 : 정원외 전담학과(전공)로서 외국인학생만을 모집함 (변경 2022.9.1.)

※학과(전공)선택

- 1.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인문):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이 1 학년(2개 학기) 수료 후 2학년 진급 시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학과(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학과(전공)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선택 기준에 따른다.(학과선발제로 입학 한 자 제외)
- 2. 전공자유학부(인문): 가. 전공자유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 수료 후 2학년 진급 시에는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다만, 정원내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디지털미디어학과 13명, 경영학과 24명 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ICT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선택대상에서 제외함). 나. 전공자유학부로 입학한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은 1학년 수료 후 2학년 진급 시에는 인문캠퍼스 및 자연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선택할 수 있다.
- 3. 창의융합인재학부 : 창의융합인재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 수료 후 2학년 진급시에는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 4. 융합전공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2개 학기) 수료 후 2학년 진급 시에는 ICT융합대학과 미래융합대학을 제외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 하여야(다만, 정원내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디지털미디어학과 7명, 경영학과 12명 까지 만 선택이 가능)하며, 미래산업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캠퍼	대	과거 됩니(기) 기고			입 학	정 원		
스	학	대학, 학부(과), 전공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자연과학대학	163	163	180	180	180	180
		수학과						
		물리학과						
	자	화학과						
	연 기	식품영양학과						
	과 학	생명과학정보학과						
	٦	생명과학정보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정보학전공)	_	_	_	_	_	-
		소계 (5개 학과)	163	163	180	180	180	180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	-	-	_	-	-
		전기공학과	_	_	-	_	_	_
		전자공학과	_	-	_	-	-	-
		정보통신공학과	_	_	-	_	_	_
		전기전자공학부	140	140	140	140	140	140
,		전기공학과						
자 연		전자공학과						
· 캠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	150	150	159	159	159	159
퍼		화학공학과						
스	7	신소재공학과						
	공 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92	92	97	97	97	97
		토목교통공학부	91	91	96	96	96	96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산업경영공학부	131	131	137	137	137	137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융합공학부	21	21	30	30	30	30
		반도체공학과	30	30				
		소 계 (5개 학부, 10개 학과)	655	655	659	659	659	659
	ICT 융합 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개 학과)	87	87	97	97	97	97
		전공자유학부(자연) (1개 학부)	_	-	64	64	64	64

※학과(전공)선택

1.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자연):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2개 학기) 수료 후 2학년 진급 시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학과(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학과(전공)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선택 기준에 따른다.(학과선발제로 입학한 자 제외)

- 2. (삭제 2022.5.1.)
- 3. 융합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2개 학기) 수료 후 2학년 진급 시에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중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학과 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른다. (변경 2022.5.1.)

캠퍼	대	과원 원범(과) 학교			입 학	· 정 원		
스	학	대학, 학부(과), 전공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21	21	23	23	23	23
		(산업디자인전공)	21	21	23	23	23	23
		(영상디자인전공)	21	21	23	23	23	23
		(패션디자인전공)	21	21	23	23	23	23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	-	-	-	-	-	-
		(*경기지도학전공)	-	-	-	-	-	-
		스포츠학부						
		(체육학전공, 스포츠산업학전공)	43	43	49	49	49	49
		(*스포츠지도학전공)	26	26	28	28	28	28
	예	바둑학과	21	21	23	23	23	23
	술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_	-	-	-	-	-
	체	(성악전공)	_	-	-	-	-	-
자	육	(작곡전공)	_	_	_	-	_	-
		영화 뮤지컬학부						
연		(영화전공)	_	_	-	-	_	-
캠		(뮤지컬공연전공)	-	-	_	_	_	-
파		예술학부						
스		(피아노전공)	21	21	23	23	23	23
		(성악전공)	21	21	23	23	23	23
		(작곡전공)	-	_	-	14	14	14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전공)	13	13	14			
		(영화전공)	18	18	20	20	20	20
		(뮤지컬공연전공)	27	27	30	30	30	30
		소계 (3개 학부, 1개 학과, 12개 전공)	274	274	302	302	302	302
		건축학부(5년제)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69	69	77	77	77	77
	건	(건축학전공)						
	축	(전통건축전공)						
	녹	(공간디자인전공)	15	15	17	17	17	17
		공간디자인학과	-	-	-	_	-	-
		소계(1개 학부, 3개 전공)	84	84	94	94	94	94
	국제학부		1	1	1	1	1	1
	(글로벌비즈니스전공)			-		-		
		소계(1개 학부, 1개 전공)	1	1	1	1	1	1
	(1	자연캠퍼스 계 1개 학부, 17개 학과, 16개 전공)	1,264	1,264	1,397	1,397	1,397	1,397
총		(19개 학부, 47개 학과, 18개 전공)	2,527	2,527	2,660	2,660	2,660	2,660

※ * 는 야간강좌 개설 학부(과)임

※학과(전공)선택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자연):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2개 학기) 수료 후 2학년 진급 시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학과(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학과(전공)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선택 기준에 따른다.(예술체육대학 및 학과 선발제로 입학한 자 제외)

※국제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의 정원외는 외국인학생만을 모집함(신설 2022.9.1.)

(별표2)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정원

(电对 2010.3.1, 2010.10.1, 2012.3.1., 2012.10.1., 2013.2.1., 2013.4.1., 2013.8.1., 2014.3.1., 2014.10.1., 2015.1.1., 2015.11.1., 2015.12.1., 2016.11.1., 2017.7.1., 2018.11.1., 2019.1.1., 2019.6.1., 201911.1., 2020.5.1., 2021.1.1., 2021.3.1., 2021.9.1., 2022.4.1., 2022.6.1., 2022.9.1., 2023.5.1., 2023.10.1., 2023.11.1.)

1. 석사과정

जी न्हों अ	계열,	왕네/네고)		입 학	정 원	
캠퍼스	협동과정	학과(전공)	2024	2023	2022	2021
인문	인문 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아랍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청소년지도학과, 미술 사학과, 아동학과(유아교육·보육, 아동가족심 리치료), 행정학과(행정학, 관리학),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제 학과, 경영정보학과, 철학과, 디지털미디어학 과, 글로벌행정학과 데이터테크놀로지학과, 응용소프트웨어학과,	110	110	110	110
	공학계열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자연	인문 사회계열 자연 과학계열 공학계열	지방행정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학과(건축학, 건축역사 및 이론, 도시 및 단지설계, 건축경영 및 건설정보, 공간디자인, 제로에너지건축), 토목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기계공학, 가상설계공학),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산업경영공학, 기술경영), 정보통신공학과, 교통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반도체공학과	166	166	166	166
	예술체육계열	체육학과(체육학, 사회체육학, 스포츠레저산 업학), 디자인학과(디자인학, 디자인예술학), 음악학과(음악학, 음악예술학), 바둑학과, 영 화·뮤지컬학과(영화, 뮤지컬공연, 영화예술학, 공연예술학) 바이오모듈레이션학, 보안경영공학, 재난안전학				
	학과간 협동과정	(재난안전학전공, 스마트엔지니어링전공), 방산안 보학,융합헬스케어학				
		계 [53개 학과 71개 전공]	276	276	276	276

[※]글로벌행정학과, 행정학과(관리학), 디자인학과(디자인예술학), 음악학과(음악예술학), 영화· 뮤지컬학과(영화예술학, 공연예술학): 정원외 전담학과(전공)로서 외국인학생만을 모집함 (신설 2022.9.1., 변경 2023.11.1.)

2. 박사과정

캠퍼스	계열,	학과(전공)		입 학	정 원	
점퍼스	협동과정	의 <u>취</u> (선명)	2024	2023	2022	2021
인문	인문 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아랍지역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학과, 청소년지도학과(청소 년지도학, 교육학), 아동학과(유아교육·보육, 아동가족심리치료), 행정학과(행정학, 관리 학),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국제통 상학과, 경제학과, 미술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경영정 보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부동산학과	80	80	80	80
	공학계열	데이터테크놀로지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사회복지학, 심리재활학				
	인문 사회계열	지방행정학과			64	64
	자연 과학계열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64		
자연	공학계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학과(건축학, 건축역사 및 이론, 도시 및 단지설계), 토목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교통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반도체공학과	64			
	예술체육 계열	체육학과(체육학, 사회체육학, 스포츠레저산 업학), 디자인학과(디자인학, 디자인예술학), 바둑학과, 영화·뮤지컬학과(뮤지컬공연, 영화 예술학, 공연예술학), 음악학과(음악학, 음악 예술학)				
	학과간 협동과정	바이오모듈레이션학, 보안경영공학, 재난안전학, 방산안보학, 융합헬스케어학(융합헬스케어, 스마 트뷰티)				
		계 [54개 학과 66개 전공]	144	144	144	144

[※]청소년지도학과(교육학전공), 행정학과(관리학), 체육학과(스포츠레저산업학전공), 디자인학과(디자인예술학), 영화·뮤지컬학과(영화예술학, 공연예술학), 음악학과(음악예술학): 정원외 전담학과(전공)로서 외국인학생만을 모집함(신설 2022.9.1., 변경 2023.11.1.)

3. 통합과정(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박사과정 설치학과) (신설 2010.3.1., 2012.10.1., 2013.2.1., 2013.4.1., 2014.10.1., 2015.1.1., 2015.12.1., 2016.11.1., 2017.7.1., 2018.11.1., 2021. 9.1., 2022.9.1., 2023.5.1., 2023.10.1.)

जी जी ४	계열,	천 귀(7) 고)		입 학	정 원	
캠퍼스	협동과정	학과(전공)	2024	2023	2022	2021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아				
		랍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학				
	인문	과, 문헌정보학과, 청소년지도학과, 미술사학과,				
인문	신문 사회계열	아동학과(유아교육·보육, 아동가족심리치료), 행				
캠퍼스	사외계 열	정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국제	_			
		통상학과,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 철학과, 디				
		지털미디어학과				
	공학계열	데이터테크놀로지학과				
	인문	지방행정학과				
	사회계열	71.8.8.8.4.4.				
	자연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				
	과학계열	과학정보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학과				
		(건축학, 건축역사및이론, 도시및단지설계), 토				
-z) 6 3	공학계열	목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				
자연	6 학계 린	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교	_	_	_	_
캠퍼스		통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예술	체육학과(체육학, 사회체육학, 스포츠레저산업				
	게 를 체육계열	학), 디자인학과, 바둑학과, 영화·뮤지컬학과(뮤				
	세포세월	지컬공연), 음악학과				
	학과간	바이오모듈레이션학, 보안경영공학, 재난안전학, 방				
	협동과정	산안보학, 융합헬스케어학(융합헬스케어, 스마트뷰티)				
		계 [51개 학과 57개 전공]	_	_	_	_

[주] 통합과정 입학정원은 자연캠퍼스 박사과정 입학정원 이내에서 충원

※ 체육학과(스포츠레저산업학전공): 정원외 전담학과(전공)로서 외국인학생만을 모집함(신설 2023.10.1.)

(별표3)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정원 (변경 2010.6.1., 2011.10.1., 2015.1.1., 2015.12.1., 2016.11.1., 2017.12.1., 2018.11.1., 2021.10.1., 2023.5.1., 2023.10.1.)

1. 석사과정

			입학정원				
캠퍼스	대학원명	학과(전공)	2024	2023	2022	2021	
		기록관리전공					
이무케로그	기록정보과학	스포츠기록분석전공	35		35	35	
인문캠퍼스	전문대학원	문화자원기록전공		35			
		AI정보과학전공					
	계 [4개 전공]						

2. 박사과정

	캠퍼스 대학원명 학과(전공)		입학정원					
캠퍼스 			2024	2023	2022	2021		
인문캠퍼스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스포츠기록분석전공 문화자원기록전공	5	5	5	5		
	계 [3개 전공]							

(별표4)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电对 2014.3.1., 2014.9.1., 2014.11.1., 2015.1.1., 2015.7.1., 2015.11.1., 2015.12.1., 2016.10.1., 2016.11.1., 2017.3.1., 2017.12.1., 2018.5.1., 2018.11.1., 2019.7.1., 2019.11.1., 2020.5.1., 2020.9.1., 2021.13.1., 2021.10.1., 2022.4.1., 2022.9.1., 2022.10.1., 2023.5.1., 2023.10.1.)

-111 >	- 기관 이	왕네(네고)	입학정원			
캠퍼스	대학원명	학과(전공)	2024	2023	2022	2021
	통합치료	평생교육학과 (토론지도, 유머와 웃음치료, 기업교육) 음악치료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상담심리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성서신학) 아동심리치료학과 (놀이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학과 (미술심리치료, 표현예술심리치료, 무용·동작심리치료) 언어치료학과 생활체육교육학과 (평생체육, 실용무용, 건강운동재활, 태권도) 철학상담치료학과	250	250	250	250
		소계 [10개 학과 20개 전공]				
	교육	교육학과 (교육행정, 상담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사 서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국제 다문화교육, 영재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인성교육, 이미지코칭, 소프트웨어융합 교육, 혁신교육, 장애통합보육교육, 독서토론 논술지도)	70	70	70	70
		소계 [1개 학과 17개 전공]				
인문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아동·청소년복지,사회복지정책)	40	40	40	40
		소계 [1개 학과 3개 전공]				
	문화 예술	예술품감정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보존관리학과 문예창작학과 교회음악학과(교회음악, 음악예술경영) 피아노페다고지학과 실용음악학과 미술사학과(미술사학, 문화유산관리, 미술기획) 공연콘텐츠학과 한국음악학과 소계 [10개 학과 13개 전공]	75	75	75	75
	부동산	부동산학과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금융투자, 부동산공·경매, 프롭테크, 도시개발·정비) 소계 [1개 학과 5개 전공]	40	40	40	40
	경영	경영학과 유통물류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서비스경영학과 (서비스경영, 뷰티&퍼스널케어경영) 글로벌경영학과	30	30	30	30
	A1 17 -	소계 [5개 학과 6개 전공]	F0F	F0F	F0F	F0F
	인분캭	H퍼스 소계 [28개 학과 64개 전공]	505	505	505	505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 정원외 전담학과(전공)로서 외국인학생만을 모집함 (신설 2022.9.1.)

ᆌᆔᅩ	미칭나이면	참마(자고)		입 학	정 원	
캠퍼스	대학원명	학과(전공)	2024	2023	2022	2021
자연	산업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 에니어그램상담심리, 스포츠산업) 세라믹디자인공학과(재료공학, 세라믹융합디자인, 차문화) 문화재학과(문화재보수기술, 문화재실측설계, 한옥) 식품양생학과 (한국전통음식문화, 한방약선) 융합보안안보학과 건강과학산업학과(스포츠코칭) 상담복지학과(상담복지, 아동보육상담) 공연예술학과(공연예술, 대중음악) 무용예술학과	70	70	70	70
	자연캠퍼스 소계 [9개 학과 18개 전공]				70	70
	ক্ট	· 계 [37개 학과 82개 전공]	575	575	575	575

(별표5) 학사과정 수여학위명(변경 2011.3.1, 2011.10.1., 2012.3.1., 2014.1.1., 2014.6.1., 2016.3.1., 2017.1.1., 2017.4.1., 2017.5.1., 2017.9.1., 2018.1.1., 2018.3.1., 2018.6.1., 2019.7.1. ,2021.1.1., 2021.6.1., 2022.6.1., 2022.11.1., 2023.3.1., 2023.6.1., 2023.9.1., 2024.1.1.)

학부(과)	수여학위명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아랍지	문 학 사
역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예창작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아시아문화학과	아 시 아 문 화 학 사
미술사학과	미술사학사
문헌정보학과	도 서 관 학 사
아동학과	아 동 학 사
청소년지도학과	교 육 학 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경제학과	경제학사
정치외교학과, 북한학과	정치학사
디지털미디어학과 사회복지학과	커뮤니케이션학사
사외녹시막파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사회복지학사 경 영 학 사
경영역과, 국제공정역과, 경영정도역과, 미대공업경영역과 부동산학과	
법학과, 글로벌법무금융학과, 법무정책학과, 법무행정학과	법 학 사
심리치료학과	심리학사
멀티디자인학과	예술학사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공 학 사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이 학 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 , ,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공 학 사
반도체공학과	
디자인학부	디 자 인 학 사
체육학부	체 육 학 사
바둑학과	바 둑 학 사
음악학부	음 악 학 사
영화 · 뮤지컬학부	영화 뮤 지 컬 학 사
스포츠학부	체육학사
예술학부(피아노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전공)	음악학사
예술학부(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전통건축학전공)	영 화 뮤 지 컬 학 사 건 축 학 사
건축학부 공간디자인전공	건 푹 휙 ^/ 건 축 디 자 인 학 사
국제학부 공상관리전공	
국제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 로 벌 비 즈 니 스 학 사
[연계전공] 중국학	중국 학사
[연계전공] 사회복지학	사 회 복 지 학 사
[연계전공] 기록정보학	기 록 정 보 학 사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
[연계전공]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	학사
[연계전공] 융합기술창업학	공 학 사
[연계전공] 반도체장비공학	반도체장비공학사
[연계전공] 광나노	이 학 사
[연계전공] 나노바이오	이학사
[연계전공] 인문ICT콘텐츠	인문ICT콘텐츠학사
[연계전공]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응용데이터사이언스학사
[연계전공]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학사
[연계전공] 프로세스자동화경영 [연계전공] 사차점령	프로세스자동화경영학사
[연계전공] 산학협력 [연계전공] 스포츠ICT	<u>공 학 사</u> 스포츠빅데이터분석학사
[연계전공] 스포스ICI [연계전공] 모빌리티설계	<u>스포스막데이터문식약사</u> 공 학 사
[연계전공] 사회혁신	
[연계전공] 자위역전 [연계전공] 프롭테크비즈니스	^ 서 외 역 전 역 사 프롭테크비즈니스학사
[연계전공] 공공인재양성	공공인재학사
[연계전공] 법조인양성	 성조인재학사
[연계전공] 도시경관디자인	도시경관디자인학사
FE/HE01 10 E PTE	<u> </u>

학부(과)	수여학위명
[연계전공] 반도체계측	반도체계측학사
[연계전공] 반도체기계설계	반도체기계설계공학사
[연계전공] 반도체데이터마이닝	반도체데이터마이닝공학사
[연계전공] 반도체인프라	반도체인프라공학사
[연계전공] 반도체소프트웨어	반도체소프트웨어공학사
[연계전공] 반도체소재	반도체소재공학사
[연계전공]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학사
[연계전공] 인공지능·ICT융합	인공지능ICT융합공학사

(별표6)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

(电对 2010.3.1, 2010.10.1, 2011.10.1., 2012.10.1., 2013.2.1., 2013.4.1., 2013.8.1., 2014.3.1., 2014.10.1., 2015.11.1., 2016.11.1., 2017.7.1., 2019.1.1., 2019.6.1., 2019.11.1., 2020.5.1., 2021.1.1., 2021.3.1., 2021.9.1., 2022.3.1., 2022.4.1., 2022.6.1., 2022.9.1., 2023.5.1., 2023.10.1., 2023.11.1.)

계 열	학과(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아랍지역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예창작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학박사
	아동학과		
	(유아교육·보육)	아동학석사	아동학박사
	(아동가족심리치료)	아동학석사	아동학박사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교육학)	_	교육학박사
인문사회	미술사학과	미술사학석사	미술사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관리학)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국제통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석사	경영정보학박사
	철학과	철학석사	철학박사
	디지털미디어학과	커뮤니케이션학석사	커뮤니케이션학박사
	지방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글로벌행정학과	행정학석사	
	부동산학과		부동산학박사

계 열	학과(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자연과학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명과학정보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학과		
	(건축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역사및이론)	공학석사	공학박사
	(도시및단지설계)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경영및건설정보)	공학석사	
	(공간디자인)	공학석사	
	(제로에너지건축)	공학석사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기계공학)	공학석사	
그런	(가상설계공학)	공학석사	
공학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과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	공학석사	
	(기술경영)	공학석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교통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환경에너지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에너지융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데이터테크놀로지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응용소프트웨어학과	공학석사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석사	
	반도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체육학과		
	(체육학)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사회체육학)	사회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스포츠레저산업학)	스포츠레저산업학석사	체육학박사
	음악학과		
	(음악학)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음악예술학)	음악예술학석사	음악예술학박사
예체능	바둑학과	바둑학석사	바둑학박사
케제궁	디자인학과		
	(디자인학)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박사
	(디자인예술학)	디자인예술학석사	디자인예술학박사
	영화·뮤지컬학과		
	(영화)	영화학석사	
	(뮤지컬공연)	뮤지컬공연학석사	뮤지컬공연학박사
	(영화예술학)	영화예술학석사	영화예술학박사
	(공연예술학)	공연예술학석사	공연예술학박사

계 열	학과(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박사
	심리재활학		심리재활학박사
	바이오모듈레이션학	이학석사	이학박사
	보안경영공학	보안경영공학석사	보안경영공학박사
학과간	재난안전학과		
	(재난안전학)	재난안전학석사	재난안전학박사
협동과정	(스마트엔지니어링)	재난안전학석사	
	방산안보학	방산안보학석사	방산안보학박사
	융합헬스케어학		
	(융합헬스케어)	이학석사	이학박사
	(스마트뷰티)		이학박사

(별표7) 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여학위명(신설 2010.6.1., 2014.9.1., 2021.10.1., 2023.10.1.)

대학원명	학부(과), 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기록정보학석사	기록정보학박사
	문화자원기록전공	기록정보학석사	기록정보학박사
	AI정보과학전공	AI정보과학석사	
	스포츠기록분석전공	스포츠기록분석학석사	스포츠기록분석학박사

(별표8)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수여학위명

(增浸 2010.1.1, 2011.3.1, 2011.5.1, 2011.10.1, 2012.4.1., 2012.10.1., 2013.4.1., 2013.10.1., 2014.3.1., 2014.9.1., 2014.11.1., 2015.11.1., 2016.11.1., 2017.3.1., 2017.12.1., 2018.5.1., 2018.11.1., 2019.7.1., 2019.9.1., 2019.11.1., 2020.3.1., 2020.5.1., 2020.9.1., 2021.3.1., 2021.10.1., 2022.4.1., 2022.9.1., 2022.10.1., 2023.5.1., 2023.10.1.)

대학원명	학과(전공)	수여학위명
,,,,,,,,,,,,,,,,,,,,,,,,,,,,,,,,,,,,,,,	평생교육	1 1 1 11 0
	(평생교육경영)	평생교육경영학석사
	(영재교육)	영재교육학석사
	(토론지도)	토론지도학석사
	(유머와웃음치료)	유머와웃음치료학석사
	(기업교육)	기업교육학석사
	무용예술	
	(무용교육)	무용교육학석사
	(공연예술행정)	무용예술학석사
	(선교예술)	구용에 <u>물</u> 익식사
	(아동국악)	아동국악석사
	음악치료	음악치료학석사
	청소년지도	교육학석사
	상담심리	
	(상담심리)	상담심리학석사
	(학습상담)	
	(신경언어프로그래밍)	NLP학석사
통합치료	기독교	
0 日 八 亚	(기독교교육,목회상담)	교육학석사
	(성서신학)	신학석사
	사회체육	체육학석사
	우슈기공학과(우슈태극권, 기공)	
	아동심리치료	심리치료학석사
	예술치료	예술치료학석사
	예술심리치료	예술심리치료학석사
	가정의례	가정의례학석사
	심상치료	심상치료학석사
	언어치료	언어치료학석사
	여가경영	여가학석사
	생활체육교육	생활체육학석사
	(평생교육, 실용무용, 건강운동재활)	생활체육학석사
	(태권도)	태권도학석사
	경배와찬양	고에서크시됩기기
	(경배와찬양학)	경배와찬양학석사
	(예배예술학)	예배예술학석사
	철학상담치료학과	철학상담치료학석사
	교육	
	(교육행정, 상담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사서	
	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국제다문	
교육		교육학석사
·	화교육, 영재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인성교육, 이미지코칭, 소프트웨어융합교육, 혁	
	신교육, 장애통합보육교육, 독서토론논술지도)	

대학원명	학과(전공)	수여학위명
사회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학석사
	문화기획	문화기획석사
	문화정보	문화정보석사
	예술품감정	예술품감정학석사
	박물관	박물관학석사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존관리학석사
	문예창작	문학석사
	사진	사진학석사
문화예술	교회음악	
· 단와에 할	(교회음악)	교회음악학석사
	(음악예술경영)	음악예술경영학석사
	피아노페다고지	피아노교수학석사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석사
	미술사학과(미술사학, 문화유산관리, 미술기획)	미술사학석사
	한국음악학과	한국음학학석사
	공연콘텐츠학과	공연콘텐츠학석사
	부동산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금융투자,	 부동산학석사
부동산	부동산공경매, 프롭테크, 도시개발ㆍ정비)	
	유통	유통학석사
	물류	물류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1 AJ	서비스경영학과(서비스경영,뷰티&퍼스널케어 경영)	경영학석사
경영	유통물류학과	유통물류학석사
	스포츠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	국제교류경영학석사
	(에니어그램상담심리)	에니어그램학석사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학석사
	지적GIS학과	공학석사
	세라믹디자인공학과	
	(재료공학, 세라믹융합디자인)	세라믹디자인공학석사
	(차문화)	차문화학석사
	문화재학과	문화재학석사
	(문화재보수기술)	문화재학석사
	(문화재실측설계)	문화재학석사
산업	(한옥)	한옥학석사
C B	식품양생학과	
	(한국전통음식문화)	식문화학석사
	(한방약선)	약선학석사
	체육무도학과	
	(체육무도)	체육무도학석사
	(태권도)	태권도학석사
	(명상교육)	명상교육학석사
	스포츠예술산업	
	(스포츠예술산업)	스포츠예술산업학석사
	(자연치유산업)	자연치유산업학석사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지도학석사
	융합보안안보학과	융합보안안보학석사

대학원명	학과(전공)	수여학위명
산업	건강과학산업학과	
	(스포츠코칭)	스포츠코칭학석사
	상담복지학과	
	(상담복지)	상담복지학석사
	(아동보육상담)	아동보육상담학석사
	공연예술학과(공연예술, 대중음악)	공연예술학석사
	무용예술학과	무용예술학석사

(별표9)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 (신설 2017.3.1., 2017.7.17., 2017.10.1., 2018.2.20., 2019.2.19., 2019.9.1., 2020.3.1., 2021.3.1., 2021.7.1., 2021.11.1., 2022.3.1., 2022.6.1., 2022.11.1., 2023.3.1., 2023.11.1., 2024.1.1.)

과정	소속	학과명칭	수여학위명	운영형태	설치연도
학사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경영학사	재교육형	2017
학사	미래융합대학	뮤직콘텐츠학과	실용음악학사	재교육형	2018
학사	미래융합대학	뷰티경영학과	뷰티경영학사	재교육형	2018
학사	미래융합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	아동보육상담학사	재교육형	2018
학사	미래융합대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아동심리상담학사	재교육형	2018
학사	미래융합대학	유아보육학과	유아보육학사	재교육형	2018
학사	미래융합대학	융합예술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사	재교육형	2018
학사	미래융합대학	만화애니콘텐츠학과	만화애니콘텐츠학사	재교육형	2019
학사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복지경영학사	재교육형	2019
학사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학과	복지상담학사	재교육형	2019
학사	미래융합대학	아동복지상담학과	아동복지상담학사	재교육형	2019
학사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경영학사	재교육형	2019
학사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경영학과	복지상담경영학사	재교육형	2020
학사	미래융합대학	스포츠산업경영학과	스포츠산업경영학사	재교육형	2020
학사	미래융합대학	아동복지경영학과	아동복지경영학사	재교육형	2020
학사	미래융합대학	융합디자인학과	융합디자인학사	재교육형	2020
학사	미래융합대학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사	재교육형	2021
학사	미래융합대학	웹툰콘텐츠학과	웹툰콘텐츠학사	재교육형	2021
학사	미래융합대학	산업안전경영학과	산업안전경영학사	재교육형	2024
석사	대학원	스마트시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공학석사	재교육형	2019
석사	대학원	반도체장비공학과	공학석사	재교육형	2021
박사	대학원	스미트시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공학박사	재교육형	2022
석사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재교육형	2023
석사	경영대학원	유통물류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재교육형	2024
석사	경영대학원	유아학교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재교육형	2024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